

특殊한 古書의 基本記入에 關하여

金 致 雨*

<目 次>

- | | |
|----------------|-----------|
| I. 緒論 | V. 邑誌, 郡誌 |
| II. 族譜, 系譜, 世譜 | VI. 經書 |
| III. 榜目 | VII. 結論 |
| IV. 儀軌 | |

I. 緒 論

圖書의 目錄을 作成할 때 가장 重要視되는 것은 基本記入이다. 基本記入은 주로 그 冊의 知的 內容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著者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書名이나 統一書名이 된다. 즉 著者가 3人以內의 圖書는 著者, 그것이 4人以上이나 모르는 圖書는 書名, 無著者名古典은 慣用書名, 그리고 特殊한 圖書는 그 內容을 一目瞭然하게 나타내는 語彙를 統一標目으로 하여 基本記入으로 한다. 이러한 基本記入은 目錄을 통한 資料의 檢索과 排列에 基準되는 것이다.

資料를 檢索하는데는 著者, 編者, 譯者, 書名, 別書名 등이 있지만, 基本記入은 그 중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흔히 基本記入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여 적당히 基本記入을 定하여 주고 其他는 副記入을 하여 주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잘 못 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根本을 바꾸어 놓는 行爲이기 때문이다. 根本이 바뀌면 一貫性이 없어지고 捻잡을 수 없는 混亂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基本記入될 것이 副記入이 되고, 反對로 副記入될 것이 基本記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 韓星女子大學, 圖書館科長.

2 도서관학논집

것이다. 그러나 資料의 性質에 따라서 또한 目錄者의 主觀에 따라서 基本記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固定 시키기 위해서 各種 目錄規則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資料의 種類가 워낙 다양하므로 아직도 古書와 같은 資料中에는 基本記入에 對해서 言及되지 않았거나 또한 되었다 하더라도 未洽한 點이 없지 않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그와 같은 特殊한 古書를 對象으로 하여 그 資料의 輸入에 效率的인 基本記入이 될 수 있도록 方法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論하고자 하는 資料의 基本記入에 관해서는 이미 先學들에 의해서 言及된 것이 있으나 筆者와 見解가 다른 것도 다루어 보았다.

II. 族譜, 系譜, 世譜

韓國目錄規則에 의하면 族譜, 系譜, 世譜等은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고 編者는 副出한다고 되어 있다.⁽¹⁾ 이렇게 하면 同一한 本貫姓氏 族譜라도 書名이 약간만 다르면 基本記入이 달라지기 때문에 合理的인 目錄의 組織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를 테면

密陽朴氏家乘譜

密陽朴氏世譜

密陽朴氏族譜

密陽朴氏派譜

라는 本貫이 같은 密陽朴氏의 族譜가 있으면 밀양박씨까지는 함께 모일 수 있으나 그 다음 部分인 家승보, 세보, 족보 및 파보에서 부터는 排列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同一한 分派의 族譜까지도 基本記入의 양식이나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불합리하기 짝이없다. 그러므로 族譜의 基本記入은 同一한 本貫姓氏는 勿論, 同一한 分派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組織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本貫姓氏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數가 많으면 異姓

(1)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서울, 1966, p. 32.

취급을 하는 姓氏들도 있음을 보면 쉽게 理解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族譜는 한 종족의 系譜로 父系中心의 혈연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책인데 祖上을 존경하고 種族의 단결을 뜻하며 後孫으로 하여금 遠近을 불문하고 화복의 풍을 이루는데 그 目的을 둔다. 族譜는 中國에서 비롯한 것으로 後漢以後 중앙 또는 지방에서 대대로 高官을 배출하는 右族, 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 가문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져 六朝時代에 이르러서는 조상의 官歷, 系譜, 집안의 임관, 승진은 물론 혼인, 교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족보의 작성 및 譜學이 발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관에서 정한 공적인 성질을 가졌던 族譜가 사적인 것으로 되고 系譜學은 쇠퇴하게 되었다. 現存하는 最古의 族譜는 中國北京圖書館에 있는 明의 嘉靖刻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朝鮮初期의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族譜는 燃藜室記述 別集에 의하면 嘉靖年間에 刊行된 「文化柳譜」라고 記錄되어 있으나 湮滅되고,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族譜는 成宗 7년에 刊行된 安東權氏族譜인 成化譜로 文化柳譜보다 80年 앞선다. 그러나 朝鮮初期以前에는 완비된 族譜는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族譜는 世代가 바뀔 때마다 增補가 되는 것이 常例이며 그 때마다 編者가 달라지는 수가 많으며, 가끔 書名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다. 설령 編者나 書名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原來의 族譜에 약간의 增補를 가하는 데 불과하지 大幅 改訂增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書名이나 編者를 基本記入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增補書에 不過한 冊의 基本記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는 것은 이상적이 못 된다. 어쨌든 族譜의 理想的인 基本記入은 本貫姓氏와 分派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增補가 계속 이루어지며, 編者와 書名이 바뀐다 해도 같은 基本記入으로 되기 때문에 合理的이다. 이때 「족보」라는 말을 統一標目으로 해주면 모든 族譜는 한 곳으로 밀착되기 때문에 더욱 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즉

4 도서관학논집

족보. 강릉김씨. 부정공파.
江陵金氏世譜

족보. 김해김씨. 금녕군파.
金海金氏金寧君派康津居生子孫家乘

족보. 김해김씨. 학용공파.
金海金氏世譜

以上과 같은 方法으로 編目을 하게 되면 모든 族譜는 한 基本記入下에 모이되, 同一本貫과 同一分派끼리도 區分된다. 族譜는 그 외에도 系譜, 譜牒, 世譜, 世系, 世誌, 家乘, 家牒, 家譜, 姓譜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族譜」라는 名稱이 慣用되고 있으므로 「족보」를 統一標目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家牒이라고 하면 同族의 全部를 記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直系에 한해 발췌 수록한 세계표를 가리키며, 家乘은 系圖 외에 조상의 전설·사적에 관한 기록을 모아서 꾸민 것이나 크게 구별되지 않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族譜는 소위 宗譜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分派된 一團의 세계에 한하여는 이를 支譜·派譜라 칭한다. 이들 派譜에는 그 卷數가 한없이 많아 宗譜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派譜는 시대를 따라 증가되어 가고 그 標題에 全州李氏良惠公派譜, 全州李氏參判公派世譜 등과 같이 本貫과 姓氏外에 支派의 中始祖名 또는 동족 부락의 거주지로 보이는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宗譜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한 성씨의 족보로서 여러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族譜의 基本記入을 統一標目으로 처음 시도한 분은 白麟氏로 알고 있다. 그 분이 編한 「古書目錄規則」⁽²⁾에 보면 「族譜, 系譜, 世譜 등은 族譜를 主標目으로 하고 宗派名을 副標目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들고 있다.

(2) 白麟 編, 古書目錄規則, 서울, 서울 大學校中央圖書館, 1936, p. 11.

족보. 선산김씨.

이것을 보던 宗派名이 本貫姓氏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本貫姓氏까지 基本記入으로 하게 되면 分派가 많은 姓氏의 族譜나 書名에 分派名이 나타나 있지 않는 族譜는 區別되지 않으므로 基本記入의 標目은 機能을 상실하고 만다. 特히 國立中央圖書館과 같이 數萬의 族譜를 收藏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筆者가 國立中央圖書館 在職時 이것을 한단계 더 發展시켜 古書編目을 할 때 分派名까지 基本記入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1970년부터 發刊된 國立中央圖書館所藏의 「고서목록」에는 分派名까지 記載되어 있다. 그 「고서목록」은 이미 作成된 카아드 目錄을 原稿로 하여 年次的으로 刊行한 冊子目錄이다. 千惠鳳教授의 古書整理法에도 보면 「系譜, 世譜, 派譜 등의 族譜類는, 「족보」를 統一標目으로 삼고 本貫姓氏를 副標目으로 하여 基本記入한다.」고 原則으로 되어 있으나 「萬一 分派까지 表示할 必要가 있다면 本貫姓氏의 다음에 그 分派名을 附記할 수 있다」고 부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족보」를 統一標目으로 하고 本貫姓氏와 分派名까지를 副標目으로 하는 方法은 筆者만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筆者는 族譜의 整理에는 이 方法을 原則으로 하자는 것이다. 勿論 分派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本貫姓氏까지만 副標目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족보. 창녕조씨.
昌寧曹氏族譜

족보. 평해손씨.
平海孫氏族譜

그런데 대개 分派名을 알 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불문하고 本貫姓氏를 副標目으로 끝나는 것으로 族譜의 基本記入을 하고 있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發刊된 薪菴文庫漢籍目錄에는 「족보」를 統一標目으로 하고

6 도서관학논집

同一音의 姓氏다음에 圓括弧를 하여 本貫을 附記하고 있으나⁽³⁾ 같은 방법인 것이다. 이를 테면

족보. 이씨(강음)
江陰李氏世譜

족보. 이씨(광주)
廣州李氏世系

만약 分派名이 記載되지 않으면 前術한 바와 같이 書名에 分派名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派譜를 검색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물며 韓國目錄規則에서와 같이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는 경우라도 「萬一 書名만으로 그 分派를 알 수 없는 것은 必要에 따라 書名 다음에 그 分派名을 補記한다」⁽⁴⁾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分派名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舊皇室 族譜인 璿源系譜記略은 「전주이씨」라는 本貫姓氏 다음에 「선원」이라는 말을 圓括弧로 묶어 附記한다. 왜냐 하면 璿源은 朝鮮全州李氏王室의 本貫을 높이어 이르는 말로서⁽⁵⁾ 全州李氏族譜에 속하기 때문이다.

족보. 전주이씨(선원) 효령대군파.
孝寧大君派璿源續譜

족보. 전주이씨(선원) 도평군파.
璿源續譜

以上과 같은 方法으로 하게 되면 舊皇室族譜도 다른 全州李氏族譜에 함께 모아되 區別이 될 수 있다.

族譜와 形式이 유사한 譜書도 많다. 즉 그것은 族譜 전반에 걸쳐서 당당한 靑丘氏譜, 簪纓譜, 萬姓大同譜 및 朝鮮氏族統譜, 國家 社會에 있어서 顯達 貴賢의 世系를 명백히 한 文譜, 三班十世譜, 縉紳五世譜 및 號譜, 자기 宗尙 중 특히 忠孝節義의 事蹟功業을 수록한 帶方世家言行錄 및 寶城宣氏五

(3)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編, 叢新文庫漢籍目錄, 1974, pp.52-55.

(4) 韓國圖書館協會 編, 前掲書, p.32.

(5) 千恩鳳 著, 古書分類目錄法, 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pp.60-61.

世忠義錄, 그리고 宦官들이 異姓을 率養하여 자손으로 삼아 혈족적 家계의 類型을 보존하고 있는 養世系譜 등이다.

그 중 養世系譜는 一般族譜와 같이 특수표목을 基本記入으로 하고 기타는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함이 좋겠다. 왜냐하면 靑丘氏譜나 號譜 등은 一姓이 系統的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族譜라고 보기 어려우나, 養世系譜는 비록 異姓을 率養한 譜書이나 그 性格이 一般族譜와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세계」라는 말을 圓括弧로 묶어 附記한다. 즉,

족보. 연안차씨(양세계)
延安車氏世譜

要略하면 族譜의 基本記入은 원칙적으로 「족보」를 統一標目으로 하고, 本貫姓氏와 分派名을 副標目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Ⅲ. 榜 目

榜目이란 科擧及第者의 名簿이다. 그러한 榜目的 種類와 性格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科擧의 種類를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榜目이 없는 高麗時代의 科擧의 種類는 省略하고, 榜目이 많이 전하는 李朝時代의 科擧의 種類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文武二科와 生員進士과 외에 譯科, 醫科, 陰陽科 및 律科등의 雜科가 있었으며, 이 중 譯科는 다시 漢學, 蒙學, 倭學과 女眞學(後에 漢學)으로 나누어지고 陰陽科에는 天文學, 地理學 및 命課學이 있었다.

이 중 文科는 文官의 登用자격 시험으로 高麗의 예에 따라 東堂試라고도 하며, 崇文政策의 영향으로 가장 중시되어 大科라는 이름이 있었다. 文科의 初試는 漢城府에서 실시하는 漢城試, 成均館에서 시행하는 館試 및 각 道에서 실시하는 鄉試의 3종이 있는데 모두 가을에 실시하였고, 이 初試의 合格者들은 이듬해 봄에 서울의 明倫堂 및 丕闡堂에서 2차 시험인 覆試를 치게

8 도서관학논집

하였다. 그 覆試에 합격한 자는 다시 궁궐 안의 殿庭에서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이는 殿試를 쳤다. 후기에 와서는 이 殿試는 형식에 그치고 覆試에 합격하면 사실상 최종의 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初試와 覆試는 모두 3場으로 初場, 中場, 終場이 있었는데 初試의 初場에서는 四書五經의 疑義와 論 중에서 2편, 中場에서는 賦, 頌, 銘, 箴, 記 중에서 1편, 表箋 중에서 1편, 終場에서는 對策 1편이었다. 覆試의 初場에서는 四書三經의 背講, 中場과 終場은 初試의 科目과 같았다. 殿試에서는 임금이 친히 對策, 表, 箋, 頌, 詔 중에서 1편을 짓게 하여 最終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이 文科에 급제한 사람들의 名簿가 文科榜目이다.

小科인 生員進士試는 司馬試 또는 監試라고 부르며 合格者는 成均館에 들어 갈 자격이 부여되고 또 하급관리로 등용될 길도 마련되었다. 初試는 成均館 또는 각 郡守가 실시하는 照訖講에 합격하여 照訖帖을 가진 15세 이상 된 자가 응시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漢城府에서 실시하는 漢城試, 각 도에서 실시하는 鄉試가 있었으며, 漢城試의 장소는 禁衛軍, 三軍府 또는 明倫堂 중에서 그때 그때 지정하였고, 鄉試는 각 도의 宣化堂에서 보았다. 역시 가을에 실시되는 初試에 합격한 자들은 다음해 봄에 서울에서 覆試를 보았다. 初試와 覆試는 다 같이 初場과 終場의 2場이 있었다. 初試와 覆試의 初場은 賦 1편, 古詩, 銘, 箴 중에 1편을 보았고, 終場에서는 五經義, 四書疑 2편을 보았다. 覆試의 初場에 합격한 자를 進士, 終場에 합격한 자를 生員이라 하였다. 이들의 名簿를 司馬榜目이라 한다.

武科는 弓術, 銃術, 講書를 시험과목으로 하고 역시 初試, 覆試, 殿試의 절차 밟아 합격자를 냈는데 그 名簿가 武科榜目이다. 이 武科榜目은 대개 文科榜目과 함께 收錄되어 있다.

雜科인 譯科, 醫科, 陰陽科, 律科는 司譯院, 典醫監, 觀象監, 刑曹에 근무하는 中人의 자제로 그 분야에 소양이 있는 자들을 모아 각각 당해 관서에서 初試, 覆試의 절차를 밟아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雜科는 지원자가 적어서 式年試 밖에 없었다. 이들의 名簿인 榜目은 別個로 되어 있는데 筆者

가 接見한 것은 譯科榜目과 醫科榜目이다.

榜目は 應試한 科擧의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科擧及第者의 名簿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書名은 대개 六甲이나 年號등으로 시작되므로 실로 다양하고 복잡해서 기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編者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編目을 함에 있어서는 「방목」을 統一標目으로 하고 司馬榜目은 「생진과」, 文科榜目은 「문과」, 武科榜目은 「무과」, 이 兩者가 속한 것은 「문무과」를 副標目으로 하며, 그리고 譯科, 醫科, 陰陽科, 律科等の 雜科榜目은 「잡과」를 副標目으로 하고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등을 附記하면 基本記入이 一目瞭然해서 좋다. 榜目에 대한 基本記入의 例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방목. 생진과.
甲子式年司馬榜目

방목. 문과.
崇禎己巳冬皇太子誕生別試文科榜目

방목. 문무과.
王世子冊封慶龍虎榜

방목. 잡과. 의과.
醫科榜目

방목. 잡과. 역과.
譯科榜目

司馬榜目은 「사마」를 副標目으로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다른 副標目인 「문과」, 「무과」, 「잡과」등과 用語上 調和가 되지 않으며, 또 親密하지 못한 語感을 준다. 「생진과」는 生員科와 進士科의 複合語로 司馬試의 一般의인 말이다. 醫科나 譯科 따위는 같은 雜科에 속한 것이므로 이들 榜目은 한 곳으로 모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儀 軌

國家의 大事가 있었을 때 후세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전달, 경과, 경비 등을 기록한 冊을 儀軌라 한다. 朝鮮에서는 國葬이나 先王의 實錄, 前朝의 史記 혹은 典籍을 편찬하는 등의 大事가 있을 때는 임시로 都監, 實錄廳 纂修廳 등의 관청을 두어 일을 거행하고 事後에 다시 儀軌廳을 설치하여 일의 傳敎, 啓辭 거래의 文牒, 경비의 수지, 物需의 實入, 人員, 座目 등 그 전달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러한 儀軌類는 都監의 設置目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種類는 매우 다양하다. 그 都監의 種類를 보면 嘉禮都監, 國葬都監, 冊禮都監, 尊號都監, 進宴都監, 山陵都監, 遷陵都監, 封陵都監, 附廟都監, 籌成都監, 實錄都監, 錄勳都監, 營建都監 등이 있다. 이 상에서 열거한 都監은 歷代를 두고 수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같은 名稱을 가진 경우라도 職務의 對象은 다르다.

그래서 目錄을 作成할 때 基本記入을 書名이나 編者로 한다면, 그것이 너무 복잡해짐은 물론 資料의 檢索도 어려워 진다. 이러한 경우는 역시 統一標目を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白麟氏는 儀軌의 基本記入으로 都監名稱을 統一標目으로 해주고 있으나,⁽⁶⁾ 그렇게 하면 다른 儀軌類는 都監의 設置目的에 따라 基本記入이 全部 分散되고 만다. 儀軌類는 職務의 對象이 같지 않는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性格의 冊이다. 그러므로 모든 儀軌類는 目錄을 作成할 때 「의궤」라는 統一標目を 사용하여 基本記入을 해주고 개개의 都監名稱은 副標目으로 해서 同一한 儀軌類는 밀착 되도록 하면 좋겠다. 몇가지 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의궤. 국장도감.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6) 白麟 編, 前撰書, p. 23.

의궤. 산릉도감.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의궤. 영접도감.
迎接都監都廳儀軌

V. 邑誌, 郡誌

邑誌나 郡誌는 고을의 연혁, 지리, 풍속 등을 기록한 책으로 古書에 상당히 많다. 그것이 비록 별개로 편집되었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邑誌나 郡誌는 地方의 地理書로서, 그것이 全部 모여야만 國家의 綜合地理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邑誌나 郡誌도 역시 統一標目을 사용하여 基本記入으로 해주는 것이 편리하다. 統一標目으로는 慣用되고 있는「읍지」를 統一標目으로 하고 해당 道名과 郡邑名을 副標目으로 해주면⁽⁷⁾ 同一한 道內의 邑誌나 郡誌가 한 곳으로 모이되 또 같은 地方의 邑誌나 郡誌가 接近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읍지. 경상도. 경주.
慶州邑誌

읍지. 경상도. 진해.
鎭海誌

읍지. 경상도. 함주.
威州誌

만약 行政區域이나 名稱이 바뀐 경우는 冊에 나타난 지명대로 表記를 해 주고 相互參照 카드를 만들어 주면 足할 것이다. 즉

읍지. 경상도. 일선.
一善誌

라는 冊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相互參照 카드를 만들어 주면 된다.

(7) 道名을 省略할 수도 있음.

읍지. 경상도. 일선은
 읍지. 경상북도. 선산도 보라.

읍지. 경상북도. 선산은
 읍지. 경상도. 일선도 보라.

以上과 같은 方法으로 하면 行政區域이나 地名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결된다.

Ⅶ. 經 書

經書란 儒敎經典을 意味한다. 이 儒敎經典도 聖書나 佛典과 마찬가지로 著者를 확실히 밝힐 수 없으며, 書名에 있어서도 各種版 및 各譯註版에 따라 異書名이 있고 또한 書名에 다른 反句가 붙어져서 길어진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 儒敎經典도 統一標目을 사용하여 基本記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目錄規則에 보면 「儒敎의 經典中 四書(大學, 中庸, 論語, 孟子) 및 五經(易經, 詩經, 禮記, 春秋)은 各各 그 慣用名稱을 標目으로 한다」⁽⁸⁾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例를 보이고 있다.

시경.

詩經諺解, 宣祖 命撰

I. 선조. 조선. 제14대 왕. II. 서명.

이것을 보면 儒敎經典의 基本記入도 統一標目を 사용하는 一般的인 傾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古書目錄에서 이와같이 個個의 儒敎經典을 모두 다른 統一標目を 사용하여 基本記入을 分散되게 하는 것은 再考해 봐야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古書라고 하면 儒敎經典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有機性이 있고 또 가장 넓이 임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基本記入으로서의 統一標目は 한 곳으로 集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儒敎經典의 一般的意味인 경서를 統一標目으로 하

(8) 韓國圖書館協會, 編. 前掲書, p. 31.

는 것이 좋겠다. 이와같이 하면 聖書나 佛典과 같이 均衡을 유지하게 되므로 더욱 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즉 聖書는 「성서」라는 統一標目を 사용하고 「신약」이나 「구약」으로 구분하여 주고 있으므로 모든 성서는 같은 統一標目 아래로 모이게 된다. 佛典 역시 「불전」을 統一標目으로 사용하므로 모든 佛典은 같은 基本記入 아래로 모이게 된다. 그런데 하물며 古書目錄에서 聖書나 佛典의 基本記入을 統一標目으로 시작되게 해주면서, 經書를 統一標目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方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古書目錄에 있어서 儒敎經典의 基本記入을 韓國目錄規則에 있어서와 같이 그 個個의 慣用名稱을 統一標目으로 하여 分散되게 하는 것⁽⁹⁾보다 「경서」를 統一標目으로 하고 個個의 慣用名稱을 副標目으로 하여 모든 儒敎經典이 같은 基本記入 아래 모이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러면 儒敎經典의 基本記入을 具體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먼저 儒敎經典의 總刻 또는 合刻類는 「경서」라는 基本記入만 준다.

경서.
十三經注疏.

論語, 孟子, 大學, 中庸 등의 四書에 관한 儒敎經典은 「사서」와 個個經典의 統一書名을 附記한다.⁽¹⁰⁾

경서. 사서. 논어.
論語集註大全

경서. 사서. 맹자.
孟子諺解

경서. 사서. 대학.
大學章句大全

경서. 사서. 중용.
中庸章句

(9) 上掲書, p. 31.

(10) 千惠鳳 著, 前掲書, pp. 34-35 參照.

14 도서관학논집

禮記, 周禮, 儀禮 등 三禮에 관한 儒敎經典은 「삼례」와 個個經典의 統一書名을 附記한다.⁽¹¹⁾ 이 경우 「삼례」라는 말 대신 「예경」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예경」보다는 「삼례」라는 말이 더 慣用되므로 「삼례」라는 말을 사용하던 좋을 것이다.

경서. 삼례. 예기.

禮記集說大全

경서. 삼례. 의례.

儀禮

경서. 삼례. 주례.

周禮

左氏傳, 公羊傳, 穀梁傳 등 春秋三傳의 儒敎經典은 「춘추」와 個個經典의 統一書名을 附記한다.⁽¹²⁾

경서. 춘추. 곡양전.

春秋穀梁傳

경서. 춘추. 공양전.

春秋公羊註疏

경서. 춘추. 좌씨전.

春秋左氏傳

其他 儒敎經典은 個個經典의 統一書名을 바로 附記한다.

경서. 서경.

尚書

경서. 주역.

周易諺解

경서. 효경.

孝經大義

(11) 上揭書, p. 35 參照.

(12) 上揭書, p. 35 參照.

易緯, 書緯, 詩緯, 論語讖, 春秋外書, 孟子外書 등 儒敎經典의 讖緯書나 外書는 個個經典의 統一書名 다음에 「참위서」 또는 「외서」를 附記한다.⁽¹³⁾

경서, 주역, 참위서.
易緯稽覽圖

그러나 撰者가 그 內容에 대하여 責任이 있는 讖緯書나 外書는 撰者名을 基本記入으로 하고, 「경서」 다음에 附記한 個個經典의 統一書名과 「참위서」 또는 「외서」를 副出한다.⁽¹⁴⁾

동, 중서.
春秋繁露 (漢)董仲舒 撰.

I. 경서. 춘추. 외서. II. 서명.

그리고 儒敎經典을 劄疑, 講錄, 記疑, 講釋, 講解한 것은 그것을 한 사람을 基本記入으로 하고 「경서」 다음에 個個經典의 統一書名을 附記하여 副出한다.

정 약용.
尚書知遠錄, 丁若鏞(朝鮮) 撰.

I. 경서. 서경. II. 서명.

VII. 結 論

目録에서 特殊한 資料는 無著者名古典이 아니라도 統一標目を 사용하여 基本記入으로 하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憲法을 「한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條約集을 「한국. 조약집」이라고 하는 것 등이 그러한 例이다. 그것은 編者나 書名 보다는 統一標目を 基本記入으로 하는 것이 其他排列이나 檢索의 方法 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統一標目を 基本記入으로 해야할 資料는 古書에 많다. 그러나

(13) 上掲書, p. 34.

(14) 上掲書, p. 34.

오늘날의 目錄法은 거의 西洋의 影響을 받은 것이므로 古書에 대한 整理方法이 特別히 言及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古書의 基本記入을 選定한다고 하더라도 古書의 特殊性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族譜의 基本記入을 書名으로 하는 것이 한 예이다. 族譜는 古書中에서 特殊한 資料인데, 그것을 一般目錄의 方法을 적용시켜서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는 것은, 그 資料의 排列이나 檢索에 있어서 가장 完全한 情報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族譜는 派譜를 찾는 데, 書名에는 分派名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무슨 派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一標目을 사용하여 基本記入으로 해서 分派名을 表示해 주어야만 그 資料를 合理的으로 排列하고, 便利하게 檢索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特殊한 古書を 對象으로 하여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基本記入을 부여하여 古書目錄의 特異性을 살려보고자 하였다. 그 原則을 要約하면 古書나 古文書는 特殊한 資料群이 많으므로 基本記入을 定함에 있어서 그 資料의 慣用名稱을 統一標目으로 하여 유사한 資料를 基本記入으로 집결 시켰다. 물론 여기에서 提示한 方法은 私見에 불과하므로 未備하거나 잘 못 된 點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적해 주면 補完 또는 是正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編. 薪菴文庫漢籍目錄. 서울, 1974.
 국립중앙도서관 編. 고서목록, 1~4. 서울, 1970~73.
 金致雨 編. 古書編目規則. 서울, 景仁文化社, 1975.
 白麟 編. 古書目錄規則. 서울,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66.
 千惠鳳 著. 古書分類目錄法, 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1966.

A Study on the Main Entry of Specific Old Oriental Books

Gim, Chi-U*

[Abstract]

As our contemporary cataloging rules are largely based on the Western classification, we have no fixed rules applicable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old Korean books. The selection of the main entry of the old books does not always represent the peculiarity of the old books. The aim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suggest a way of making main entry of the peculiar old books.

* Dept. of Library Science, Busan Junior Vocational Women College.